

동서대학교 학생인건비 관리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서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계상·지급·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학생인건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학생연구원”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(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)을 말한다.

② “학생인건비”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.

③ “내·외부 인건비”라 함은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일반연구원(휴학생, 수료생, 졸업생, 타교생, 연구교수, 초빙교원 등)의 인건비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별 전담기관의 별도 인건비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에 적용하며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계상기준) ①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·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 제5장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에 따라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.(월 급여(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) × 참여기간(개월) × 참여율(%))

②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.(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)

③ 대학(원)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, 총 과제 참여율 100%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한다.

④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경우, 해당 인건비와 총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.

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책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, 연구 활동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집행기준) ① 연구책임자는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·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 제5장에 따라 참여연구원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, 과제담당자는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매월 25일(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 직전일) 학생인건비를 집행한다. 단, 참여연구원 등록이 늦어지거나 참여연구원 변경이 있을 경우 학생인건비 지출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및 월별 참여율은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한다.

④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.

⑤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경우, 해당 인건비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제6조(공동관리 금지)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 1인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, 인건비 재분배, 개별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.

③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는 등 부당한 학생인건비 유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자체 조사하여야 한다.

제7조(연구책임자의 의무)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 활동,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,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,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·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책임자는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8조(학생인건비 유용 방지)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한다.

제9조(자체점검)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유용방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학생인건비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서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·교외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